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공고 제2025-16호

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년인턴 채용
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

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(제2025-6호)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3. 19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

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☐ 창원고용센터(9명)

응시번호 (면접순서)	모집 구분	채용분야 (지원코드)	성 명	비 고
창원-03	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년인턴	고용노동 (인턴01)	이○경	※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연락/안내
창원-04			김○민	
창원-05			김○영	
창원-06			김○빈	
창원-07			조○현	
창원-08			민○주	
창원-11			배○희	
창원-15			김○준	
창원-17			김○아	

☐ 마산고용센터(3명)

응시번호 (면접순서)	모집 구분	채용분야 (지원코드)	성 명	비 고
마산-03	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년인턴	고용노동 (인턴01)	김○진	※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연락/안내
마산-04			김○현	
마산-05			유○현	

2 면접일시 및 장소

☐ 면접일시: ‘25. 3. 24.(월) 10:00~

-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면접장소 도착

☐ 면접장소: 창원지청 1층 대회의실

-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

☐ 면접방법: 집단면접

3 제출 서류

※ 아래 해당 서류를 '25. 3. 20.(목) 18:00까지 메일(yeeslar@korea.kr)로 제출

* 메일 제목(예시):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(홍길동), **별지 서식은 자필기재 및 서명하여 '25.3.20.까지 스캔파일을 메일로 제출한 후, '25.3.24. 면접 당일 원본 제출**

☐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별지, 필수 제출)

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(필수 제출)

* 청년인턴 응시자격(중앙행정기관 인턴 근무경력) 확인 용도

** **(발급방법)**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' 접속(https://total.comwel.or.kr)→개인(일반근로자) 선택→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→'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' 선택→보험구분 '고용', 조회구분 '상용' 선택→직종포함여부 '예' 선택, **'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'** 신청·출력

☐ 우대요건(가점)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우대요건	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	증빙서류(제출 서류)
장애인	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조	□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
저소득층	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	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	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	□ 한부모가족증명서
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	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보호대상자	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우대요건	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	증빙서류(제출 서류)
다문화가족 지원대상자	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에 해당하는 자	□ ①가족관계증명서,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③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,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각 1부

4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

ㅇ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지참**하여야 합니다.

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ㅇ 면접시험 대상자는 본인의 지정된 **면접시험 2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**한 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ㅇ 면접시험 대상자는 **면접시험 시간을 준수**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 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
※ 별도 또는 추가면접은 없음

ㅇ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**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**할 수 있습니다.

ㅇ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ㅇ 합격자 발표 후라도 **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
ㅇ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**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**할 수 있습니다.

5 최종합격자 발표

□ **'25. 3. 26.(수) 창원지청 홈페이지,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공고 및 개별 통보**

ㅇ 문의처(담당자)

-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공현도 (Tel : 055-239-6527)

<별지>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성명 : (서명)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귀하